

審 查 報 告 書

1994.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년 11월 21일 속초시장
(수정예산안 : 1994년 12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30일 회부
(수정예산안 : 1994년 12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4. 12. 9) 상정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4. 12. 14) 질의·답변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4. 12. 15) 질의·답변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4. 12. 16) 질의·답변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4. 12. 17)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94. 12. 19) 축조심사,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최상익)

가. 제안이유

-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제안

나. 주요골자

-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 '94 예산액 600억4천6백만원의 23.4%인 140억7천6백만원
이 증가한 741억 2천2백만원으로서

- 일반회계는
 - 89억 3천4백만원이 증가한 532억 1천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 총 8개 특별회계에 51억 4천2백만원이 증가한 209억 1천2백만원으로서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1천2백만원과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2억 4천만원 증가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56억 5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3천8백만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천 4백만원
 -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백만원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2천2백만원 증가와
 -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 5천1백만원
 -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4천만원 감소로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5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음.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 이태우)

- 법정 경비 및 필수적 경상비로 예산편성 지침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 급식비, 여비, 정액활동비, 일용직인건비, 공공요금,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조정 가능한 경비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며,
- 기 계상된 각종경상비는 '94년 수준하에서 계상된 것이 대부분 이어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예산계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 각실과 소관별 투자사업비는 면밀히 분석하여 상호 연계성 등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하면 매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해년도 분만 지급하는지는?	○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지급
○ 주전산기 임차계약 및 장비설치에 대하여는?	○ 임차계약으로 장비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95. 1. 1일부터 정상 운영 계획임.
○ 자활촌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를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하여는?	○ 토목공사는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가 가능하나, 본 공사는 교량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가 어려우므로 용역코자 함.
○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대책은?	○ 총사업비 50억원중 국비 17억 8천만원, 도비 3억 1천4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지원 계획이며, 앞으로 잔여 사업비 29억 6백만원은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함.
○ 시설비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자치단체에 심의기구 구성·운영실태는?	○ 현재 심의기구 없음.
○ 예산안에 계상된 양여금이 감액 또는 미교부시 사업추진은?	○ 양여금 사업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안에 계상 하였으며, 감액 또는 미교부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정하 추진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종합운동장 조형물 설치목적은?	○ 종합운동장 입구 안내표시 조형물임
○ 충용아파트 부지 매각대금 세입가능여부는?	○ 금년도에 토지 대부가 만료되기 때문에 국방부에 분양될 것으로 판단하여 세입 계상하였음.
○ 설악동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의뢰하면 누수요인을 적출할 수 있는지?	○ 현재 자체 누수탐사와 노후관 교체를 통하여 누수가 없도록 추진중에 있으나, 계속 누수시 용역 의뢰하면 가능함.
○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목적과 장소는?	○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외국 관광객과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내지역에 설치예정임.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修 正 案 要 旨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 수정이유 :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실효성이 없는 예산과 기존장비 활용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체육진흥을 활성화 하여야 하는 예산은 증액하였음.

다. 수정 주요골자

○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9,160천원
 -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50,000천원
 -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6,000천원
- 총 65,160천원을 삭감하여

- 문화 및 체육비,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9,495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예비비 55,665천원
- 총 65,160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

7. 審査結果 : 수정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

붙임 :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부. 끝.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299

발의년월일 : 1994. 12. 19.

발의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실효성이 없는 예산과 기존장비 활용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체육진흥을 활성화 하여야 하는 예산은 증액하였음.

2. 수정내용

- 1)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제2000장, 제2300관, 제3210항 자활촌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는 실효성이 없어 "9,160천원"을 전액 삭감한다.
- 2) 제5000장, 제5100관, 제5110항 종합운동장 조형물 설치비는 실효성이 없어 "50,000천원"을 전액 삭감한다.
- 3) 제6000장, 제6200관, 제6210항 싸이클 구입비는 기존장비 활용이 가능함으로 "6,000천원" 전액 삭감하고,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는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9,495천원" 증액한다.
- 4) 제8000장, 제8400관, 제8410항 예비비로 "55,665천원"을 증액한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 출

(단위 : 천원)

관	장		지방자치 단체세출 예산액	수 정 안		수 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항	세항		감액	증액		
합 계			74,122,418	65,160	65,160	74,122,418	
일 반 행정비 2000	내 무 행정비 2300	내 무 행정 2310	1,956,862	9,160		1,947,702	· 자활촌 진입로 개설 · 실시설계비 실효성이 없어 '9,160천원' 전액 삭감
지 역 개발비 5000	도 시 개발비 2310	도시계 획관리 5110	3,794,860	50,000		3,744,860	· 종합운동장 조형물 · 설치비 실효성이 없어 '50,000천원' 전액 삭감
문화및 체육비 6000	체육비 6200	체육진 흥관리 6210	566,389	6,000	9,495	569,884	· 사이클구입비 기존장 · 비 활용이 가능함으로 '6,000천원' 전액 삭감 ·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 체육진흥 활성화를 · 위하여 '9,495천원' · 증액
지 원및 기 타 경 비 8000	예 비 비 8400	예 비 비 8410	756,100		55,665	811,765	· 예비비로 '55,665천원' · 증액

1994. 12.

— '95年度 束草市歲入歲出豫算案 —

檢 討 報 告

專 門 委 員 李 泰 雨



1995年度 東草市 歲入歲出 豫算案 檢討報告

1. 豫算規模

가. 1995년도 속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은

- 먼저 일반회계 부문은
 . 세입세출은 전년대비 13.1%가 증가한 50,072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일반 특별회계로써
 . 세입세출은 전년대비 32.6%가 증가한 20,912백만원이며,
- 총 세입·세출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회	계	별	'95 예산액	'94 예산액	증 감 액	비 율
합	계		70,984	60,046	10,938	118.2%
일	반	회 계	50,072	44,277	5,795	113.1%
특	별	회 계	20,912	15,769	5,143	132.6%
공 기 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740	4,328	412	109.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261	6,021	5,240	187.0%
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42	905	238	126.3%
	주 택 사 업	특별회계	2,618	3,469	△851	75.5%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10	695	15	102.1%
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0	79	△39	50.3%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28	121	7	105.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73	151	122	180.5%

나. 歳入豫算

○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95 예 산 액		'94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비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50,072	100.0%	44,277	100.0%	5,795	113.1 %
지	방 세	13,431	26.8%	11,558	26.1%	1,873	116.2 %
세	외 수 입	6,323	12.7%	11,942	27.0%	△5,619	52.9 %
	경상적 수입	5,255	10.5%	4,715	10.7%	540	111.5 %
	임시적 수입	1,068	2.2%	7,227	16.3%	△6,159	14.8 %
지	방 교 부 세	11,279	22.5%	10,492	23.7%	787	107.5 %
지	방 양 여 금	4,761	9.5%	4,054	9.2%	707	117.4 %
보	조 금	13,879	27.7%	6,131	13.8%	7,748	226.4 %
	국 비	5,324	10.6%	1,999	4.5%	3,325	266.3 %
	도 비	8,555	17.1%	4,132	9.3%	4,423	207.0 %
지	정 재 원	399	0.8%	100	0.2%	299	399.0 %

○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95 예 산 액		'94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비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20,912	100.0%	15,769	100.0%	5,143	132.6 %
세	외 수 입	12,212	58.4%	15,079	95.6%	△2,867	81.0 %
	경상적 수입	6,292	30.3%	7,102	45.0%	△810	88.6 %
	임시적 수입	5,920	28.3%	7,977	50.6%	△2,057	74.2 %
보	조 금	700	3.3%	690	4.4%	10	104.3 %
	국 비	554	2.6%	548	3.5%	6	101.1 %
	도 비	146	0.7%	142	0.9%	4	102.8 %
지	정 재 원	8,000	38.3%	-	0.0%	8,000	- %

다. 歳出豫算

○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95 예 산 액		'94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비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50,072	100.0%	44,277	100.0%	5,795	113.1%
인	건 비	9,642	19.3%	9,299	21.0%	343	103.7%
물	건 비	6,858	13.7%	5,658	12.8%	1,200	121.2%
경	상 비	5,078	10.1%	4,563	10.3%	515	111.3%
자	본 지 출	27,503	54.9%	24,112	54.5%	3,391	114.1%
보	전 재 원	112	0.2%	39	0.1%	73	287.2%
내	부 거 래	123	0.3%	144	0.3%	△21	85.4%
예	비 비	756	1.5%	462	1.0%	294	163.6%

○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95 예 산 액		'94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비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20,912	100.0%	15,769	100.0%	5,143	132.6%
인	건 비	1,138	5.5%	973	6.2%	165	116.9%
물	건 비	1,946	9.3%	1,508	9.6%	438	129.0%
경	상 비	1,894	9.1%	3,624	23.0%	△1,730	52.3%
자	본 지 출	10,656	51.0%	5,881	37.3%	4,775	181.2%
용	자 · 출자금	174	0.8%	215	1.3%	△41	80.9%
보	전 재 원	4,610	22.0%	2,972	18.8%	1,638	155.1%
내	부 거 래	114	0.5%	113	0.7%	1	100.9%
기	타	101	0.5%	201	1.3%	△100	50.2%
예	비 비	279	1.3%	282	1.8%	△3	98.9%

2. 檢 討 意 見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총 예산은 50,072백만원으로 '94년도 44,277백만원보다 5,79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13,431백만원으로 그중 보통세 12,273백만원, 목적세 1,023백만원, 과년도 수입 135백만원으로 '94년도보다 1,87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매년 증가 추세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 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6,323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수입 5,255백만원, 임시적수입 1,068백만원으로 '94년도 보다 5,619백만원이 감소된 바, 주 감소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2,107백만원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 2,995백만원이 감소 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 되지 않아 '94년도 10,492백만원보다 7.5% 증가한 11,279백만원으로 잠정 계상 하였고.
- 지방양여금도 확정되지 않아 '94년도 4,054백만원 보다 17.4% 증가한 4,761백만원으로 잠정 계상하였고
- 보조금은 총 13,879백만원이며 '94년도 6,131백만원 보다 126.4%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가 5,324백만원, 도비보조가 8,555백만원으로 현재까지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가내시된 상태로 계상하였으며.

○ 지정재원은 399백만원으로 계상 되었음.

※ 지정재원 과목(법정과목 : 장) 은 '95년도 신설과목으로
중전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지방채, 재산매각
수입, 보조금 사용잔액, 기부금 및 기금 수입, 부담금 등
이 별도로 법정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 1) 지방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의 총세입은 4,740백만원으로
'94년도의 4,328백만원에 비하여 412백만원이 증액되어
9.6%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영업수익이 증가 되었으며,
- 2)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1,261백만원으로 '94년도의 6,021백만원
에 비하여 87%가 증가한 5,240백만원 증가 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역개발기금 8,000백
만원이 계상되고 만천택지 연부분양수입 556백만원이 감소되고
또한 과년도 이월금 719백만원 감소 되었으며,
- 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42백만원으로 사업수입
864백만원, 사업외수입 27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94년 보다 23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4)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618백만원으로 사업
수입 1,044백만원, 사업외수입 1,57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94년 보다 851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 5)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10백만원으로 사업외
수입 10백만원, 보조금 700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94년도
보다 1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6)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백만원으로 모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94년도 보다 39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 7)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8백만원으로 사업수입 3백만원, 사업외수입 125백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94년도 보다 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8)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3백만원으로 매각수입 136백만원, 융자금 이자 수입 137백만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94년도 보다 12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出 豫算

- 1)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072백만원으로

		《구성비》
○ 의 회 비	536백만원	(1.1%)
○ 일반행정비	14,468백만원	(28.9%)
○ 사회복지비	11,432백만원	(22.8%)
○ 산업경제비	3,207백만원	(6.4%)
○ 지역개발비	18,012백만원	(36.0%)
○ 문화·체육비	1,370백만원	(2.7%)
○ 민방위비	120백만원	(0.3%)
○ 지원 및 기타경비	927백만원	(1.8%)

- 법정과목(장) 별로 검토를 해보면
- 의회비는 53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6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인건비와 경상비 일부가 증가되었으며,
- 일반행정비는 14,46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760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 기획관리비는 본청 공무원 인건비와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55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공보비는 주민제도용 신문구독료 88백만원이 동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12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내부행정비의 특별한 사항은 공무원 42명에 대한 국외연수비가 109백만원, '95년부터 시행하는 공익 근무요원 51명에 대한 경비 38백만원, 사회진흥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0백만원, 자활촌 진입로 개설사업비 261백만원, 선거관리 업무추진비 329백만원 등, 전년도에 비해 909백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정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무행정비는 전년도보다 3,102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국공유 재산의 토지보상비와 토지매입비, 청사 증·개축비가 감소 되었으며, 그외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사회복지비는 11,43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04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 복지사업비는 가정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또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는 국고보조 1,000백만원을 포함한 1,900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보건위생비는 국고보조 사업인 청초호 준설사업비 3,11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외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 청소사업비는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와 시범공중화장실 시설, 위생환경사업소의 신규시설 투자사업비 등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35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산업경제비는 3,20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 농수산비는 농업육성사업으로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등 7건에 238백만원, 수산진흥사업으로 소규모 어항 개발등 10건에 1,247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 임업비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618백만원 등 투자적 사업비가 7건에 837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보다 전반적으로 12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역경제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80백만원과 지역경제및 노정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비 28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지역개발비는 18,01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0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 도시개발비의 주요 투자사업은 모두 7건에 854백만원으로 도시계획 변경 및 지적고시 용역비 100백만원, 사진항 진입로 개설공사 240백만원 등 8개사업이 계상되었고,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75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건설사업비의 주요 투자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도로유지 관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건에 606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미시로 확포장 사업의 8건에 대한 14,002백만원은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 계상한 사업비로 사료되며, 그외 동 소규모 사업비가 390백만원이 계상되는 등 전년도에 비해 건설사업비는 전반적으로 200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문화 및 체육비는 1,37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8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 문화예술진흥비는 문화원, 예총 육성 보조, 시립합창단 운영, 문화회관 운영비등 74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관리 분야는 해수욕장 운영비 53백만원, 관광특구 관련 종합개발 용역비 50백만원, 해양박물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백만원 등이며,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9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체육비는 싸이클 선수 운영비 122백만원, 종합운동장관리 사업소 운영비 244백만원, 기타 체육관련 경비로써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97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민방위비는 12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 민방위비는 대부분이 정상적 경비로 11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 소방비는 소방관 화재 출동 비상근무 매식비 5백만원 등 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6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지원 및 기타경비는 926백만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170백만원, 예비비 75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 特別會計 歲出 豫算編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64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직원 인건비가 172백만원 증액되고, 채무상환액 17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설악동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가 30백만원 계상되었으며,
-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1,26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95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2,035백만원, 청초호유원지 토지보상금 8,000백만원, 청초지구 종합터미널 연부상환금 1,052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43백만원으로 하수도시설 18건외에 927백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120백만원으로 주민 편익을 위한 환경개선, 재해위험지구 예방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618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50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감소요인은 지방채 상환이 857백만원이 감소된 바, 원인은 주택은행과의 연체액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개인별 채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633백만원을 변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10백만원으로 의료진료비 677백만원, 일반운영비 11백만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1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28백만원으로 융자금 120백만원은 자활의욕이 강한 영세민에게 융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40백만원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소득지원 융자금이며, 전년도에 비해 39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73백만원으로 차입금 이자 137백만원, 경상비 14백만원, 예비비 12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라. 一般會計 豫算의 綜合的인 檢討意見

○ 공무원 인건비	9.642백만원 (19.3%)
○ 지역개발 투자사업비	27.502백만원 (54.9%)
○ 채무상환액	1.370백만원 (2.7%)
○ 법정경비 및 필수경상비	10.802백만원 (21.6%)
○ 예비비	756백만원 (1.5%)

-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39.5%로 '94년도 53.1%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나, '95년부터는 환원투자를 해야 하는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 자치단체 부담금은 세외수입에서 제외되므로 순수자체 수입으로 재정자립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재정자립도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투자비가 54.9%를 차지한 것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의 상당액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법정경비 및 필수적 경상비로 예산편성 지침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 급식비, 여비, 정액활동비, 일용직 인건비, 공공요금,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조정 가능한 경비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며,
- 기 계상된 각종 경상비도 '94년 수준하에서 계상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예산계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 각실과 소관별 투자사업비는 면밀히 분석하여 상호 연계성 등을 검토하고 또한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와 계획이 있었는지를 예산심의시 확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 번호	299
----------	-----

제출년월일 : 1994. 11.

제 출 자 : 속초시 장

1. 조 문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별첨과 같이 승인한다를 구함.

2. 제안사유

○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제안

3. 참고사항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 별첨

예 산 종 목 표

제 1 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입시처입 할수있는 회계액을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 세출 예산총액	입시 처입 회두액	비 고
합		74,122,418	2,220,000	
일				
번	회 계	53,210,521	1,596,000	
별	회 계	20,911,897	624,000	
소 계		16,001,055	479,000	
국	입			
	수 도 시 읍 특 별 회 계	4,740,000	142,000	
공 영 개 별 시 읍 특 별 회 계		11,261,055	337,000	
소 계		4,910,842	145,000	
기	수 도 시 읍 특 별 회 계	1,142,600	34,000	
타	주 백 시 읍 특 별 회 계	2,617,905	78,000	
목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709,727	21,000	
	세 바 물 소 득 금 고 운 영 특 별 회 계	39,944	1,000	
	저 소 득 생 활 인 정 기 금 특 별 회 계	128,000	3,000	
회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입 특 별 회 계	272,666	8,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 · 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4 조 1995년도 지방채별행 한도액은 8,000백만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1,766천원으로 한다.

(가) 사업세충당률표

(단위: 원/㎡)

구분	세	합				합				합				합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95 예산액	구입비	'94 예산액	구입비	증감	'95 예산액	구입비	증감	'95 예산액	구입비	'94 예산액	구입비	증감	'95 예산액	구입비	'94 예산액	구입비					
합계	100 지방세	74,122,418	100.0%	60,045,997	100.0%	14,076,421	53,210,521	100.0%	44,276,608	100.0%	8,933,913	20,911,897	100.0%	15,765,389	100.0%	5,112,988							
	200 시위수입	13,431,259	18.1%	11,558,000	19.2%	1,873,259	13,431,259	25.2%	11,558,000	26.1%	1,873,259		0	0.0%	0	0.0%							
	210 영업외수입	18,498,755	25.0%	27,021,019	45.0%	8,522,264	6,286,525	11.9%	11,941,796	27.0%	5,655,271	12,212,230	58.4%	15,079,223	95.6%	2,866,993							
	220 영업외수입	11,510,932	15.5%	11,816,819	19.7%	-305,887	5,218,513	9.8%	4,714,501	10.7%	504,012	6,232,419	30.1%	7,102,318	46.0%	809,899							
	300 일반교부세	6,987,823	9.5%	15,204,200	25.3%	-8,216,377	1,068,012	2.1%	7,227,295	16.3%	6,159,283	5,919,811	28.3%	7,976,995	40.6%	2,057,184							
	400 시범영예금	13,364,000	18.0%	10,492,000	17.5%	2,872,000	13,364,000	25.1%	10,492,000	23.7%	2,872,000		0	0.0%	0	0.0%							
	500 보조금	3,761,985	5.1%	4,653,849	6.8%	-291,864	3,761,985	7.1%	4,653,849	9.2%	-291,864	699,667	3.3%	690,166	4.1%	9,401							
	510 국고보조금	16,561,881	22.3%	6,821,129	11.3%	9,740,752	15,862,214	29.8%	6,130,963	13.8%	9,731,251	553,445	2.6%	517,641	3.5%	5,794							
	520 도비보조금	5,877,936	7.9%	2,546,623	4.2%	3,331,313	5,324,491	10.0%	1,998,912	4.5%	3,325,579	146,222	0.7%	142,515	0.9%	3,707							
	600 조립교부금	10,683,945	14.4%	4,274,506	7.1%	6,409,439	10,537,723	19.8%	4,131,991	9.3%	6,405,732		0	0.0%	0	0.0%							
기타	700 시정세인	0	0.0%	0	0.0%	0	504,538	0.9%	100,000	0.2%	404,538	8,000,000	38.3%	0	0.0%	8,000,000							
	인건비	8,504,538	11.5%	100,000	0.2%	8,404,538	9,618,938	18.1%	9,299,474	21.0%	319,464	1,137,954	5.4%	961,617	6.1%	176,337							
	물건비	10,756,892	14.5%	10,261,091	17.1%	495,801	6,918,938	13.1%	5,658,384	12.8%	1,318,866	1,915,719	9.3%	1,534,064	9.7%	411,655							
	경상이전	8,922,969	12.0%	7,192,448	12.0%	1,730,521	5,977,250	13.1%	5,658,384	12.8%	1,318,866	1,915,719	9.3%	1,534,064	9.7%	411,655							
	시본지출	7,178,414	9.7%	8,315,867	13.8%	-1,137,453	5,284,862	9.9%	4,562,765	10.3%	722,097	1,893,552	9.1%	3,753,102	23.8%	1,859,550							
	공사·출자금	40,939,256	55.2%	30,032,416	50.0%	10,906,840	30,282,746	56.9%	24,111,589	54.5%	6,171,157	10,646,510	51.0%	5,920,827	37.5%	4,725,683							
	보통인세인	173,746	0.2%	215,029	0.4%	-41,283	111,900	0.2%	38,900	0.1%	73,000	4,610,492	22.1%	2,812,978	18.0%	1,797,514							
	내부거래	4,722,392	6.4%	2,881,828	4.8%	1,840,564	123,060	0.2%	143,532	0.3%	20,472	114,000	0.5%	113,500	0.7%	500							
	기타	237,060	0.3%	257,032	0.4%	-19,972					0												
	예비비	101,000	0.2%	204,000	0.4%	-103,000			0	0.0%	0	101,000	0.5%	204,000	1.4%	103,000							
	합계	1,090,689	1.5%	686,286	1.1%	404,403	811,765	1.5%	461,964	1.0%	349,801	278,924	1.3%	234,322	1.4%	54,603							

(11) 이비화기 세입초과
금

구분	'95 예산액	'94 예산액	증 △ 감
합 계	53,210,521	44,276,688	8,933,913
100 시 병 세	13,431,239	11,538,000	1,873,239
200 세 의 수입	6,286,525	4,592,375	1,694,150
210 경정세입금	5,218,513	4,714,501	504,012
211 개인임대수입	367,872	335,389	32,483
212 시용료수입	186,193	95,950	89,233
213 시인정수입	830,069	298,761	531,308
214 시인정수입	0	0	0
215 상하수도수입	3,244,380	3,428,400	-184,020
216 아시수입	590,000	555,000	35,000
220 임시차입금	1,068,012	6,164,399	5,096,387
221 순세계잉여금	850,000	2,957,265	2,107,265
222 인건비수입	0	0	0
223 동시세수입	183,012	177,134	5,878
224 회계연도수입	35,000	3,030,000	2,995,000
225 과년도수입	0	0	0
300 시 병교부세	13,364,000	10,492,000	2,872,000
310 시 병교부세	13,364,000	10,492,000	2,872,000
400 시 병영의금	3,761,965	4,053,849	-291,884
410 시 병영의금	3,761,965	4,053,849	-291,884
500 조경교부금	0	0	0
510 조경교부금	0	0	0
600 보 조금	15,862,214	6,130,993	9,731,221
610 국도보조금	5,324,491	1,998,972	3,325,519
620 시도보조금	10,537,723	4,131,991	6,405,732
700 시정세원	504,538	1,162,895	-658,358
710 시정세원	504,538	1,162,895	-658,358
720 세시세기수입	308,324	100,000	208,324
730 보조금	0	499,253	-499,253
800 기타수입	0	0	0
810 기타수입	0	0	0
820 기타수입	0	0	0
830 기타수입	0	0	0
840 기타수입	196,214	563,643	-367,429

(단위: 원)

(11) 이비화기 세출초과
금

구분	'95 예산액	구입비	'94 예산액	구입비	증 △ 감
합 계	53,210,521	100.0%	44,276,688	100.0%	8,933,913
1000 의회비	550,743	1.0%	375,350	0.8%	175,393
1100 의회운영비	550,743	1.0%	375,350	0.8%	175,393
2000 일반회계	15,064,458	28.4%	16,228,421	36.6%	1,163,966
2100 기획관리	6,993,202	13.1%	7,068,320	16.0%	75,718
2200 내무행정	133,214	0.3%	210,176	0.5%	106,962
2300 재무행정	6,845,048	12.9%	5,013,680	11.3%	1,831,368
2400 세무행정	1,092,994	2.1%	3,905,648	8.8%	2,812,654
3000 사회복지	11,917,616	22.4%	7,027,607	15.9%	4,890,009
3100 복지사업	4,877,550	9.2%	3,651,716	8.3%	1,225,834
3200 보건위생	4,258,562	8.0%	1,213,155	2.7%	3,045,407
3300 문화체육	2,781,504	5.2%	2,159,736	4.9%	621,768
3400 환경관리	3,226,644	6.1%	3,088,725	7.0%	137,919
4000 산업경제	2,070,830	3.9%	2,016,265	4.6%	54,565
4100 농업수입	948,160	1.8%	810,080	2.0%	138,080
4200 임업수입	207,654	0.4%	172,380	0.4%	35,274
4300 임업경영	19,730,661	37.1%	14,603,030	33.0%	5,127,631
5000 도시개발	3,795,160	7.2%	3,151,464	7.1%	643,696
5100 건설사업	6,985,395	13.1%	7,097,923	16.0%	112,527
5200 시설수입	8,878,899	16.7%	4,290,268	9.7%	4,588,631
5300 교통관리	71,206	0.1%	63,375	0.2%	7,831
6000 문화체육	1,615,834	3.0%	2,257,856	5.1%	642,022
6100 문화예술진흥	915,990	1.7%	839,025	1.9%	76,965
6200 교 육	699,884	1.3%	1,418,831	3.2%	718,947
7000 일반회계	122,417	0.2%	133,752	0.4%	11,335
7100 일반회계	115,014	0.2%	119,879	0.3%	4,865
7200 조경	7,373	0.0%	13,873	0.1%	6,500
8000 시민복지	982,148	1.8%	561,864	1.2%	420,284
8100 사회복지	170,383	0.3%	99,900	0.2%	70,483
8200 사회복지	0	0.0%	0	0.0%	0
8300 사회복지	0	0.0%	0	0.0%	0
8400 사회복지	811,765	1.5%	461,964	1.0%	349,801

(단위: 원)

가) 특별회계 사업세 중 종량료

(단위: 원)

구분	회계	금기입특별회계			기타			회계		잔액	잔액
		수	입수도사업	공영개발	수	하수도사업	주역사업	기금	세비금		
시범세	20,911,897	16,001,055	4,740,000	11,261,055	4,910,842	1,142,600	2,617,905	709,727	39,911	128,000	272,666
세액수입	12,212,230	8,001,055	4,740,000	3,261,055	4,211,175	1,142,600	2,617,905	10,060	39,911	128,000	272,666
감상직세입	6,292,419	4,108,426	2,846,676	1,261,750	2,183,993	864,600	1,043,583		111	3,000	272,666
입시직세입	5,919,811	3,892,629	1,893,324	1,999,305	2,027,182	278,000	1,574,322	10,060	39,800	125,000	
시범교부세	0	0			0						
시범양이금	0	0			0						
보조금	699,667	0	0	0	699,667	0	0	699,667	0	0	0
국고보조금	553,445	0			553,445			553,445			
도비보조금	146,222	0			146,222			146,222			
조점교부금	0	0			0						
시정세입	8,000,000	8,000,000		8,000,000	0						
인건비	1,137,954	1,120,114	1,107,874	12,240	17,840	17,840					13,519
물건비	1,945,719	1,086,848	1,063,913	22,935	858,871	17,343	139,081	688,320	609		136,899
감상이전	1,893,552	713,078	713,078		1,180,474		1,043,584				
시본지출	10,656,510	9,604,760	513,920	9,090,840	1,051,750	1,051,750					
용자출자금	173,746	0			173,746			14,407	39,319	120,000	
보전세원	4,610,492	3,175,265	1,140,215	2,035,040	1,435,237		1,435,237				
대부거래	114,000	100,000	100,000		14,000	14,000					
기타	101,000	101,000	1,000	100,000	0						
예비비	278,924	100,000	100,000		178,924	41,667		7,000		8,000	122,257

1. 예산총치

제1조 (총칙) 1995년도속주시인수수도사업특별회계당중예산은다음과같이정한다.

제2조 (업무에관한) 업무의예정액은다음과같이정한다.

(인수도사업)

가.인수도수	19,561	원
나.인건총배수액	12,775	천원
다.1인법률배수액	35	원
라.주요건설개발사업		

제3조 (수익사업별지출) 수익사업별지출이예정액은다음과같이정한다.

	수	입
제1권인수도사업수익	3,594,000	천원
제1항인입수익	3,142,148	원
제2항인입외수익	451,852	원
제3항특별이익	-	원

지 출

제1권	집수도 기입비용	3,245,865	천원
계1항	입입비용	2,575,859	*
제2항	입입입비용	616,006	*
계3항	특별수입	1,000	*
제4항	예비비	50,000	*

제4조 (기본지수입 및 지출의 예외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본지수입에이 기본지지출에에 대하여 부족된 금액 1,328,135 원은 넘년도 손익계정
 일부 기본 348,135 원이 이원금 및 넘년도 이익잉여금처분에 980,000 원만 지출된
 편입으로 보려하는 것으로 한다.

수 입

제1권	기본지수입	166,000	천원
제1항	교정지식 배지수입	*	
제2항	교정부제수입	*	
제3항	외어금수입	166,000	*
제4항	기타 기본지수입	*	

지 출

제1권 기본지 지출	1,494,135	기안
제1항 기본설비지선	303,920	-
제2항 비기본설비지선	-	-
제3항 이양지선	-	-
제4항 부속설비지선	-	-
제5항 부지 및 기타지선	-	-
제6항 고압부속설비	1,140,215	-
제7항 기타 기본지 지출	-	-
제8항 예비비	50,000	-

제5조 (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인입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계부지역은 별첨 "계속비율서"에 정한다.)

년	항	지 인 명	총 액	년		인 한 액
				년도	년도	
기본지 지출	기본설비지선	상수도지선 외 정 공지	13,762 백만	1995	년도	5,735 백만
				1996	년도	3,000 백만
				1997	년도	5,027 백만
				199	년도	백만

제9조 (예산권유금서제택) 다음에 개기하는 제택의 결비는 이외의 이월을 거치지 않으며 그 결비를 다른 제택의 결비에 전용할 수 없다.

(1) 기 본 금	527,730	천원
(2) 일반종기비(비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	1,320	천원
(3) 특수회동비()	26,520	천원

제10조 (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특수부서유금 지수내렸음 인하여 비특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금 금액은 14,000 천원이다.

제11조 (이이익금의 예치제택) 이익이익금 천원과 넘지않 예치이익금 천원 중 천원 중 천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결손부전금	-	천원
(2) 이익저리금	-	천원
(3) 각 제택리금	-	천원
(4) 간회계결손리금	-	천원
(5) 남부금	-	천원

제12조 (제모커선 구입회동액) 제모커선 구입회동액은 천원으로한다. (그 제모내역은 별첨 “제모커선 구입 및 사용주서” 외 같다.)

제13주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에 같이 한다. (1) 기본
 내역은 별첨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주제"에 같다.)

구분	중	분	명	액	수	액	금	액
1. 취득 및 처분			별	액				취득액
2. 처분 및 처분								

제14주 (회계기준) 회계기준의 변화에 관한 처리방법은 제14주에 같다.

1994 년 12 월 2 일

수 주 사 장

1. 예산총액

제 1 조 (총칙) 1995년도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2 조 (업무에정량) 업무의 에정량은 다음과 같다.

가. 연건총생신량

○ 태 기 조 성	31m' (31평)
○ 공단 용 기 조성	
○ 유 인 기 조성	411 31m' (124 31평)
○ 주택 기립 면적	(기 1')

나. 연건 공급 면적

○ 태 기 조 성	31m' (31평)
○ 공단 용 기 조성	
○ 유 인 기 조성	
○ 주택 공급 면적	211 31m' (64 31평)

제 3 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입

제 1 편 -공영개발 사업수익	2,322,520 천원
제 1 항 영입 수익	1,261,750 천원
제 2 항 영업외 수익	1,060,770 천원
제 3 항 특별이익	- 천원

지출

제 1 편 -공영개발 사업비용	2,170,215 천원
제 1 항 영업비용	35,175 천원
제 2 항 영업외 비용	2,035,040 천원
제 3 항 특별손실	100,000 천원
제 4 항 예비비	- 천원

제 4 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수입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액에 1,090,840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산 유보지금 152,305천원,이월및당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에 2,170,215천원

및 저립금 천원으로 보전하는것으로 한다.

수

입

제 1 권 자본적 수입

8,000,000 원입

제 1 항 고정자산 배기수입

"

제 2 항 투자 및 기타 지선수입

"

제 3 항 유동부채 수입

"

제 4 항 고정부채 수입

8,000,000

"

제 5 항 잉여금 수입

"

제 6 항 기타 자본적 수입

"

기

출

제 1 권 자본적 지출

9,090,840 원입

제 1 항 재 고정 자산

9,090,840

"

제 2 항 임대주택 기원사업비

"

제 3 항 공동설비지선

"

제 4 항 비공동설비지선

"

제 5 항 이익자산

"

제 6 항 투자 및 기타지선

"

제 7 항 유동부채 상환

"

제 8 항 고정부채 상환

"

제 9 항 기타 자본적 지출

"

제 10 항 예비비

"

제 5 주 (계속비) 계속비의 종액과 연월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 세부내역은 별첨P.21"계속비구식" 의 같다)

과	형	시	업	명	총	액	년	도	비	구
					"	있	음	"		

제 6 주 (사무부담행위) 사무부담행위를 할수있는 사항과 기간 및 회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지	형	기	간	회	도	액
		년도에서 년도까지				개인

제 7 주 (기케이) 기케이 목지, 회도에, 기케이 방법, 이지율 및 상회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 케 목 지	회 도 액	기 케 방 법	이 지 율	상 회 방 법
정초호 유원지 케비사업	8,000,000 천원	강원도 지역개별기금	연 8 %	3년까지 2년 전부 상회

제 8 조 (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 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예산전용금지처분) 다음에 개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이회의 이결을 거치지 않고는 1 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 | | | | |
|---------|-----|-------|----|
| 1. 금 | 이 | - | 천원 |
| 2. 빈, 텅 | 부 비 | 2,700 | 천원 |

제 10 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공영개발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부터 이 특별회계에 부속하는 금에은 - 천원이다.

제 11 조 (이이잉어금의 처분) 이월이잉어금 - 천원과 당년도 예정이이 잉어금 - 천원 총 - 천원 중 - 천원은 다음의 길이 처분한다.

- | | | |
|-------------|---|----|
| 1. 이월결산 보조금 | - | 천원 |
| 2. 이이 저립금 | - | 천원 |
| 3. 김케 저립금 | - | " |
| 4. 김실개량 저립금 | - | " |
| 5. 남 부 금 | - | " |

제 12 조 (제고지신 구입한도액) 제고지신 구입한도액은 - 천원으로 한다.

(그 세부내역은 " 제고지신구입 및 사용주서 "에 같다.)

제 13조 (중요지식 취득 및 처분) 중요지식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부내역은 "중요지식취득 및 처분주지"에 같다.)

구분	종류	명칭	수량	금액
1. 취득지식				
2. 처분지식				

제 14조 (회계기준) 회계기준의 범위에는 회계원으로 정한다.

1994. 12.

수 초 시 장 하 상 철